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법 인 **대 한 병 원 협 회**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기한 변경사항 안내

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가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, 제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0조

나.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-18호)

다.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- 3725(2014.11.24)

3.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재 출생신고 지연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중입니다.

4. 따라서, 고시 개정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**30일 이내에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신청 사유와 함께 비용 신청시 상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**

○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 비용 신청하지 못한 경우 조치사항

- (위탁의료기관) <의학적 소견>란에 지연사유를 작성하여 비용상환 신청

- (보건소)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 후 비용 지급

※ 추후 별도 비용상환 지연 신청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예정임

끝.

대 한 병 원 협 회



수신처

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장

대리 최명희 팀장 정교숙 국장 방성민 상근부회장 이계용

시행 : 기획정책 제 2014-367 (2014.11.27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13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cmh@kha.or.kr